

글로벌평생학습원 운영 규정

제정 2010.02.22

개정 2013.02.25

개정 2014.02.18

개정 2021.05.25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학칙」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부설 글로벌평생학습원(이하 “학습원”이라 한다)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본조 명칭변경 및 전문개정 2021.05.25.]

제2조 (목적) <삭제 2021.05.25.>

제3조 (소재지) 학습원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내에 둔다. 다만, 필요시에는 외부에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05.25.>

제4조 (교육과정의 개설) ① 학습원에는 학위교육과정과 비학위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.

② 학위교육과정은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지칭하며,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.

③ 비학위교육과정은 일반교육과정, 자격교육과정, 위탁교육과정을 지칭하며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.

[본조 명칭변경 및 전문개정 2021.05.25.]

제5조 (정원) 각 과정별 정원은 원장이 정한다.

제6조 (수업) 학습원의 수업은 주간, 야간 및 계절제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5.25.>

제7조 (교육장소) 학습원의 교육장소는 본교의 시설을 활용한다. 단, 필요시 교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3.02.18., 2021.05.25.>

제 2 장 조 직

제8조 (직제) <삭제 2021.05.25.>

제9조 (원장) ① 학습원에는 학습원장을 두며 원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1.05.25.>

② 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<개정 2021.05.25.>

제10조 (조직) ① 학습원에 학위교육과정부, 일반교육과정부, 자격교육과정부, 위탁교육과정부 및 행정실을 둘 수 있다.

② 각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학위교육과정은 학점은행 학위과정의 개발 및 운영, 교재 개발 및 학위과정의 발전 방향 연구 등에 관한 사항
2. 일반교육과정은 교양강좌 개발 및 운영, 교재개발 및 일반교육과정 발전 방향 연구 등에 관한 사항
3. 자격교육과정은 전문자격 개발 및 운영, 교재개발 및 전문교육과정 발전 방향 연구 등에 관한 사항과 민간자격개발 및 관리, 직업능력개발 운영, 국가공인자격인증 사업 등에 관한 사항
4. 위탁교육과정 외부기관과의 협약과정,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② 학습원에는 사무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③ 사무직원은 본교 직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, 학습원의 교무, 학사 및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.

④ 평생학습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학습원 산하에 부설 평생학습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.

[본조 명칭변경 및 전문개정 2021.05.25.]

제11조 (겸임교원) 학습원에는 필요에 따라 초빙교원 또는 겸임교원을 둘 수 있다.

[본조 명칭변경 및 전문개정 2021.05.25.]

제12조 (강사료) ① 학습원의 강사료 지급기준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21.05.25.>

② 특별강사료는 개설과정의 특수성, 수강료, 수강인원 및 강사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21.05.25.>

제 3 장 운영자문위원회

제13조 (운영자문위원회) 학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[본조 명칭변경 및 전문개정 2021.05.25.]

제14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, 그 중 1인은 학외 인사를 포함한다. 간사는 행정직원이 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[삭제 2013.02.25., 전문개정 2021.05.25.]

제15조 (임기) <삭제 2013.02.25.>

제16조 (회의) <삭제 2013.02.25.>

제17조 (심의사항)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
2.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4. 기타 학습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1.05.25.>

제 4 장 학사운영

제18조 (등록시기) 학습원자 수강등록은 과정별로 개강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1.05.25.>

제19조 (수강자격) 수강신청자의 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 학력, 연령, 경력 등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5.25.>

제20조 (등록원서의 제출) 수강신청자는 소정의 등록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[본조 명칭변경 및 전문개정 2021.05.25.]

제21조 (선발절차) 수강자 선발은 과정별로 수강료 납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5.25.>

제22조 (교육기간) 교육기간은 각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.

[본조 명칭 변경 및 전문개정 2021.05.25.]

제23조 (수강료) ① 수강생은 등록시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학점은행제 과정의 수강료 반환은 「평가인정 학습과정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.

③ 학점은행제 이외 수강료 반환은 「평생교육법시행령」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.

④ 각 교육과정별 수강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
[본조 명칭변경 및 전문개정 2021.05.25.]

제24조(이수 교과목 및 시간) 과정별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21.05.25.>

제24조의 2 (성적평가) 성적평가는 출석, 시험, 과제, 수업참여도 등의 방식으로 과정별 특

성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05.25.]

- 제25조 (수료증 및 자격증 수여)** ① 각 과정에 설치된 강좌를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를 인정하고 소정의 수료증(서식 제1호)을 수여한다. <개정 2021.05.25.>
- ② 학습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자격증 또는 인증서(서식 제2호)를 수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5.25.>
- ③ 자격증과 인증서의 기준, 절차, 서식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
제 5 장 포상과 징계

- 제26조 (장학 및 포상)** ①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다른 수강생에게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또는 포상할 수 있다.
- ② 장학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- [본조 명칭변경 및 전문개정 2021.05.25.]

- 제27조(징계)** 수강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수강생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5.25.>

- 제28조 (수강생 활동금지)** 수강생은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, 농성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제 6 장 재 정

- 제29조 (재정)** ① 학습원 운영경비는 수강료, 위탁과정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21.05.25.>

- 제29조의 2 (회계)** ① 학습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② 학습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.
- ③ 학습원의 회계업무는 본교 예산회계업무규정에 따른다.
- [본조 신설 2014.02.18.]

제 7 장 공 개 강 좌<삭제>

- 제30조 (공개강좌)** <삭제 2021.05.25.>

제 7 장 보 칙

제31조 (학점은행제)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1.05.25.>

제32조 (시행세칙) 본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5.25.>

제33조 (준용규정)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학사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0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4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1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평생교육원 명칭이 글로벌평생학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, 규정명을 평생교육원 규정에서 글로벌평생학원 운영 규정으로 변경한다.

제

호

수료증

성명 : ○ ○ ○

주민번호 : ○○○○○○ - ○XXXXXX

위 수강생은 글로벌평생학습원에서 개설한
증서를 발급합니다.

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

증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서울과학종합대학원 글로벌평생학습원 원장

제	호
---	---

자 격 인 증 서

성 명 : ○ ○ ○

주민번호 : ○○○○○○○○ - ○XXXXXXX

자 격 명 :

위 수강생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부설 글로벌평생학습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
자격을 득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함

년 월 일

서울과학종합대학원 글로벌평생학습원 원장